

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			
제출인	상호(대표자) 전라북도 전주장학숙					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51-9 (전화번호: 063-240-4808)						
석면해체· 제거 사 업 장	건물명 전주장학숙					위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51-9	
	연면적(m ²) 7,108m ²					작업기간 2022-06-17-2022-07-11	
	석면건축자재[길이(m)·면적(m ²)·부피(m ³)] 1181.21m ² (필요시 별지 첨부)						
측정 기관	대표자 구 지 연					사업자등록번호	
	주 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215, 2층 측정자/분석자 측정자						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 장비 (종류/수량)	유량 (ℓ/분)	측정 일시	측정 결과 (f/cc)	검출석면의 종류
	별지첨부						
측정 지점	비산측정 시작 사진			비산측정 종료 사진		비고	
	별지첨부			별지첨부			
	측정 시작 시간			측정 종료 시간			

「석면안전관리법」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.

2022년

07월

일

제출인(발주처)

전라북도 전주장학숙

귀하

전주시장

(서명 또는 인)

첨부서류

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서 사본

수수료
없 음

■ 석면비산 측정 결과표

구분	지점	지점수	시료측정위치	비고
작업중	부지경계선	4개 이상	부지경계선 높이 1.2-1.5m	-
	위생설비 입구	전수(1개이상)	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	-
	작업장 주변	실내	1개이상	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
		실외	1개이상	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
	음압기	전수(1개이상)	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	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-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
	폐기물 반출구	전수(1개이상)	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, 높이 1.2-1.5m	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
	폐기물보관지점	전수(2개이상)	폐기물 보관소 주변, 1m이내, 높이 1.2-1.5m	-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
	거주자 주거지역	2개소 이상	해체/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~3m, 높이 1.2~1.5m	-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

<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분석번호	AR.NO.20220704					분석 일시	2022. 07. 04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장비 (종류/수량)	유량 (ℓ/분)	측정일시	측정 결과 (f/cc)	검출석면의 종류
	-	공시료	-	-	22. 07. 04	-	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
	-	공시료	-	-	22. 07. 04	-	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
	A - 1	부지경계선1	SARA5100 / 1	10.6	22. 07. 04	0.0031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A - 2	부지경계선2	SARA5100 / 1	10.6	22. 07. 04	-	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
	A - 3	부지경계선3	SARA5100 / 1	10.6	22. 07. 04	-	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
	A - 4	부지경계선4	SARA5100 / 1	10.5	22. 07. 04	-	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
	A - 5	위생설비입구	SARA5100 / 1	10.5	22. 07. 04	0.0041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A - 6	작업장주변	SARA5100 / 1	10.6	22. 07. 04	0.0038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A - 7	음압기배출구	SARA5100 / 1	10.6	22. 07. 04	0.0058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A - 8	음압기배출구	SARA5100 / 1	10.5	22. 07. 04	0.0042	백석면 (기준치미만)
분 석 연 구 원							

※ 참 고

-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(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)에 따라 1m³당 0.01개 이하를 말한다.
(공기 중 농도 기준 : 0.01개/cm³ 이하)
-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사용 및 재발행 될 수 없음.
-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.
- 검출한계 <0.002/cm³ "<"는 검출한계를 뜻함.

(주)하늘석면기술연구원



■ 석면비산 측정 결과표

구분	지점	지점수	시료측정위치	비고
작업종	부지경계선	4개 이상	부지경계선 높이 1.2-1.5m	-
	위생설비 입구	전수(1개이상)	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	-
	작업장 주변	실내	1개이상	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
		실외	1개이상	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
	음압기	전수(1개이상)	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	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
	폐기물 반출구	전수(1개이상)	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, 높이 1.2-1.5m	-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
	폐기물보관지점	전수(2개이상)	폐기물 보관소 주변, 1m이내, 높이 1.2-1.5m	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
	거주자 주거지역	2개소 이상	해체/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~3m, 높이 1.2~1.5m	-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

<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분석번호	AR.NO.20220704					분석 일시	2022. 07. 04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장비 (종류/수량)	유량 (ℓ/분)	측정일시	측정 결과 (f/cc)	검출석면의 종류
	A - 9	폐기물반출구	SARA5100 / 1	10.5	22. 07. 04	0.0058	백석면 (기준치미만)
분 석 연 구 원							

※ 참 고

-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(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)에 따라 1m³당 0.01개 이하를 말한다. (공기 중 농도 기준 : 0.01개/cm³ 이하)
-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사용 및 재발행 될 수 없음.
-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.
- 검출한계 <0.002/cm³ "<"는 검출한계를 뜻함.

(주)하늘석면기술연구원



■ 석면비산 측정 결과표

구분	지점	지점수	시료측정위치	비고
작업 중	부지경계선	4개 이상	부지경계선 높이 1.2-1.5m	-
	위생설비 입구	전수(1개이상)	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	-
	작업장 주변	실내	1개이상	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
		실외	1개이상	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
	음압기	전수(1개이상)	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	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
	폐기물 반출구	전수(1개이상)	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, 높이 1.2-1.5m	-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
	폐기물보관지점	전수(2개이상)	폐기물 보관소 주변, 1m이내, 높이 1.2-1.5m	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
	거주자 주거지역	2개소 이상	해체/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~3m, 높이 1.2~1.5m	-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

<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분석번호	AR.NO.20220705					분석 일시	2022. 07. 05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장비 (종류/수량)	유량 (ℓ/분)	측정일시	측정 결과 (f/cc)	검출석면의 종류
	-	공시료	-	-	22. 07. 05	-	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
	-	공시료	-	-	22. 07. 05	-	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
	B - 1	부지경계선1	SARA5100 / 1	10.6	22. 07. 05	-	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
	B - 2	부지경계선2	SARA5100 / 1	10.5	22. 07. 05	0.0030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B - 3	부지경계선3	SARA5100 / 1	10.6	22. 07. 05	-	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
	B - 4	부지경계선4	SARA5100 / 1	10.5	22. 07. 05	-	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
	B - 5	위생설비입구	SARA5100 / 1	10.5	22. 07. 05	0.0038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B - 6	작업장주변	SARA5100 / 1	10.6	22. 07. 05	0.0047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B - 7	음압기배출구	SARA5100 / 1	10.6	22. 07. 05	0.0056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B - 8	음압기배출구	SARA5100 / 1	10.5	22. 07. 05	0.0045	백석면 (기준치미만)
분 석 연 구 원							

※ 참 고

-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(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)에 따라 1m³당 0.01개 이하를 말한다. (공기 중 농도 기준 : 0.01개/cm³ 이하)
-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사용 및 재발행 될 수 없음.
-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.
- 검출한계<0.002/cm³ "<"는 검출한계를 뜻함.

(주)하늘석면기술연구원



■ 석면비산 측정 결과표

구분	지점	지점수	시료측정위치	비고
작업 중	부지경계선	4개 이상	부지경계선 높이 1.2-1.5m	-
	위생설비 입구	전수(1개이상)	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	-
	작업장 주변	실내	1개이상	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
		실외	1개이상	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
	음압기	전수(1개이상)	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	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
	폐기물 반출구	전수(1개이상)	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, 높이 1.2-1.5m	-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
	폐기물보관지점	전수(2개이상)	폐기물 보관소 주변, 1m이내, 높이 1.2-1.5m	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
	거주자 주거지역	2개소 이상	해체/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~3m, 높이 1.2~1.5m	-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

<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분석번호	AR.NO.20220705					분석 일시	2022. 07. 05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장비 (종류/수량)	유량 (ℓ/분)	측정일시	측정 결과 (f/cc)	검출석면의 종류
	B - 9	폐기물반출구	SARA5100 / 1	10.6	22. 07. 05	0.0055	백석면 (기준치미만)
분 석 연 구 원							

※ 참 고

-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(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)에 따라 1m³당 0.01개 이하를 말한다. (공기 중 농도 기준 : 0.01개/cm³ 이하)
-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사용 및 재발행 될 수 없음.
-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.
- 검출한계 <0.002/cm³ "<"는 검출한계를 뜻함.

(주)하늘석면기술연구원



■ 석면비산 측정 결과표

구분	지점	지점수	시료측정위치	비고
작업중	부지경계선	4개 이상	부지경계선 높이 1.2-1.5m	-
	위생설비 입구	전수(1개이상)	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	-
	작업장 주변	실내	1개이상	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
		실외	1개이상	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
	음압기	전수(1개이상)	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	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
	폐기물 반출구	전수(1개이상)	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, 높이 1.2-1.5m	-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
	폐기물보관지점	전수(2개이상)	폐기물 보관소 주변, 1m이내, 높이 1.2-1.5m	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
	거주자 주거지역	2개소 이상	해체/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~3m, 높이 1.2~1.5m	-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

<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분석번호	AR.NO.20220706					분석 일시	2022. 07. 06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장비 (종류/수량)	유량 (l/분)	측정일시	측정 결과 (f/cc)	검출석면의 종류
	-	공시료	-	-	22. 07. 06	-	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
	-	공시료	-	-	22. 07. 06	-	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
	C - 1	부지경계선1	SARA5100 / 1	10.6	22. 07. 06	0.0031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C - 2	부지경계선2	SARA5100 / 1	10.6	22. 07. 06	-	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
	C - 3	부지경계선3	SARA5100 / 1	10.5	22. 07. 06	-	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
	C - 4	부지경계선4	SARA5100 / 1	10.5	22. 07. 06	-	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
	C - 5	위생설비입구	SARA5100 / 1	10.6	22. 07. 06	0.0035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C - 6	작업장주변	SARA5100 / 1	10.6	22. 07. 06	0.0045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C - 7	음압기배출구	SARA5100 / 1	10.5	22. 07. 06	0.0053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C - 8	음압기배출구	SARA5100 / 1	10.5	22. 07. 06	0.0047	백석면 (기준치미만)
분석 연구원							

※ 참 고

-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(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)에 따라 1m³당 0.01개 이하를 말한다. (공기 중 농도 기준 : 0.01개/cm³ 이하)
-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사용 및 재발행 될 수 없음.
-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.
- 검출한계 <0.002/cm³ "<"는 검출한계를 뜻함.

(주)하늘석면기술연구원



■ 석면비산 측정 결과표

구분	지점	지점수	시료측정위치	비고
작업종	부지경계선	4개 이상	부지경계선 높이 1.2-1.5m	-
	위생설비 입구	전수(1개이상)	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	-
	작업장 주변	실내	1개이상	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
		실외	1개이상	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
	음압기	전수(1개이상)	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	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
	폐기물 반출구	전수(1개이상)	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, 높이 1.2-1.5m	-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
	폐기물보관지점	전수(2개이상)	폐기물 보관소 주변, 1m이내, 높이 1.2-1.5m	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
	거주자 주거지역	2개소 이상	해체/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~3m, 높이 1.2~1.5m	-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

<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분석번호	AR.NO.20220706					분석 일시	2022. 07. 06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장비 (종류/수량)	유량 (l/분)	측정일시	측정 결과 (f/cc)	검출석면의 종류
	C - 9	폐기물반출구	SARA5100 / 1	10.5	22. 07. 06	0.0051	백석면 (기준치미만)
분 석 연 구 원							

※ 참 고

-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(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)에 따라 1m³당 0.01개 이하를 말한다. (공기 중 농도 기준 : 0.01개/cm³ 이하)
-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사용 및 재발행 될 수 없음.
-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.
- 검출한계 <0.002/cm³ "<"는 검출한계를 뜻함.

(주)하늘석면기술연구원



■ 석면비산 측정 결과표

구분	지점	지점수	시료측정위치	비고
작업중	부지경계선	4개 이상	부지경계선 높이 1.2-1.5m	-
	위생설비 입구	전수(1개이상)	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	-
	작업장 주변	실내	1개이상	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
		실외	1개이상	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
	음압기	전수(1개이상)	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	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
	폐기물 반출구	전수(1개이상)	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, 높이 1.2-1.5m	-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
	폐기물보관지점	전수(2개이상)	폐기물 보관소 주변, 1m이내, 높이 1.2-1.5m	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
	거주자 주거지역	2개소 이상	해체/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~3m, 높이 1.2~1.5m	-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

<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분석번호	AR.NO.20220707					분석 일시	2022. 07. 07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장비 (종류/수량)	유량 (l/분)	측정일시	측정 결과 (f/cc)	검출석면의 종류
	-	공시료	-	-	22. 07. 07	-	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
	-	공시료	-	-	22. 07. 07	-	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
	D - 1	부지경계선1	SARA5100 / 1	10.5	22. 07. 07	0.0029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D - 2	부지경계선2	SARA5100 / 1	10.6	22. 07. 07	-	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
	D - 3	부지경계선3	SARA5100 / 1	10.5	22. 07. 07	-	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
	D - 4	부지경계선4	SARA5100 / 1	10.6	22. 07. 07	-	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
	D - 5	위생설비입구	SARA5100 / 1	10.6	22. 07. 07	0.0031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D - 6	작업장주변	SARA5100 / 1	10.5	22. 07. 07	0.0048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D - 7	음압기배출구	SARA5100 / 1	10.5	22. 07. 07	0.0050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D - 8	음압기배출구	SARA5100 / 1	10.6	22. 07. 07	0.0045	백석면 (기준치미만)
분 석 연 구 원							

※ 참 고

-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(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)에 따라 1㎡당 0.01개 이하를 말한다. (공기 중 농도 기준 : 0.01개/㎤ 이하)
-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사용 및 재발행 될 수 없음.
-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.
- 검출한계 <0.002/㎤³ " <"는 검출한계를 뜻함.

(주)하늘석면기술연구원



■ 석면비산 측정 결과표

구분	지점	지점수	시료채취위치	비고
작업종	부지경계선	4개 이상	부지경계선 높이 1.2-1.5m	-
	위생설비 입구	전수(1개이상)	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	-
	작업장 주변	실내	1개이상	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 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
		실외	1개이상	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 -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
	음압기	전수(1개이상)	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	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
	폐기물 반출구	전수(1개이상)	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, 높이 1.2-1.5m	-
	폐기물보관지점	전수(2개이상)	폐기물 보관소 주변, 1m이내, 높이 1.2-1.5m	-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
	거주자 주거지역	2개소 이상	해체/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~3m, 높이 1.2~1.5m	-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

<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분석번호	AR.NO.20220707					분석 일시	2022. 07. 07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장비 (종류/수량)	유량 (l/분)	측정일시	측정 결과 (f/cc)	검출석면의 종류
	D - 9	음압기배출구	SARA5100 / 1	10.6	22. 07. 07	0.0053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D - 10	폐기물반출구	SARA5100 / 1	10.5	22. 07. 07	0.0058	백석면 (기준치미만)
분 석 연 구 원							

※ 참 고

-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(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)에 따라 1m³당 0.01개 이하를 말한다. (공기 중 농도 기준 : 0.01개/cm³ 이하)
-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사용 및 재발행 될 수 없음.
-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.
- 검출한계<0.002/cm³ "<"는 검출한계를 뜻함.

(주)하늘석면기술연구원



■ 석면비산 측정 결과표

구분	지점	지점수	시료측정위치	비고
작업중	부지경계선	4개 이상	부지경계선 높이 1.2-1.5m	-
	위생설비 입구	전수(1개이상)	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	-
	작업장 주변	실내	1개이상	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
		실외	1개이상	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
	음압기	전수(1개이상)	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	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
	폐기물 반출구	전수(1개이상)	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, 높이 1.2-1.5m	-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
	폐기물보관지점	전수(2개이상)	폐기물 보관소 주변, 1m이내, 높이 1.2-1.5m	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
	거주자 주거지역	2개소 이상	해체/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~3m, 높이 1.2~1.5m	-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

<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분석번호	AR.NO.20220708					분석 일시	2022. 07. 08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장비 (종류/수량)	유량 (l/분)	측정일시	측정 결과 (f/cc)	검출석면의 종류
	-	공시료	-	-	22. 07. 08	-	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
	-	공시료	-	-	22. 07. 08	-	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
	E - 1	부지경계선1	SARA5100 / 1	10.5	22. 07. 08	0.0035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E - 2	부지경계선2	SARA5100 / 1	10.6	22. 07. 08	-	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
	E - 3	부지경계선3	SARA5100 / 1	10.6	22. 07. 08	-	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
	E - 4	부지경계선4	SARA5100 / 1	10.6	22. 07. 08	-	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
	E - 5	위생설비입구	SARA5100 / 1	10.5	22. 07. 08	0.0042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E - 6	작업장주변	SARA5100 / 1	10.5	22. 07. 08	0.0039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E - 7	음압기배출구	SARA5100 / 1	10.6	22. 07. 08	0.0054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E - 8	폐기물 반출구	SARA5100 / 1	10.6	22. 07. 08	0.0058	백석면 (기준치미만)
분석 연구원							

※ 참 고

-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(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)에 따라 1m³당 0.01개 이하를 말한다. (공기 중 농도 기준 : 0.01개/cm³ 이하)
-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사용 및 재발행 될 수 없음.
-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.
- 검출한계 <0.002/cm³ "<"는 검출한계를 뜻함.

(주)하늘석면기술연구원



■ 석면비산 측정 결과표

구분	지점	지점수	시료측정위치	비고
작업 중	부지경계선	4개 이상	부지경계선 높이 1.2-1.5m	-
	위생설비 입구	전수(1개이상)	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	-
	작업장 주변	실내	1개이상	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 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
		실외	1개이상	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 -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
	음압기	전수(1개이상)	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	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
	폐기물 반출구	전수(1개이상)	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, 높이 1.2-1.5m	-
	폐기물보관지점	전수(2개이상)	폐기물 보관소 주변, 1m이내, 높이 1.2-1.5m	-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
	거주자 주거지역	2개소 이상	해체/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~3m, 높이 1.2~1.5m	-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

<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분석번호	AR.NO.20220708					분석 일시	2022. 07. 08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장비 (종류/수량)	유량 (ℓ/분)	측정일시	측정 결과 (f/cc)	검출석면의 종류
	E - 9	폐기물보관지점	SARA5100 / 1	10.6	22. 07. 08	-	백석면 (기준치미만)
	E - 10	폐기물보관지점	SARA5100 / 1	10.5	22. 07. 08	-	백석면 (기준치미만)
분 석 연 구 원							

※ 참 고

-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(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)에 따라 1m³당 0.01개 이하를 말한다. (공기 중 농도 기준 : 0.01개/㎤ 이하)
-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사용 및 재발행 될 수 없음.
-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.
- 검출한계 <0.002/㎤ " <"는 검출한계를 뜻함.

(주)하늘석면기술연구원



■ 석면비산 측정 결과표

구분	지점	지점수	시료측정위치	비고
작업장	부지경계선	4개 이상	부지경계선 높이 1.2-1.5m	-
	위생설비 입구	전수(1개이상)	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	-
	작업장 주변	실내	1개이상	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
		실외	1개이상	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
	음압기	전수(1개이상)	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	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
	폐기물 반출구	전수(1개이상)	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, 높이 1.2-1.5m	-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
	폐기물보관지점	전수(2개이상)	폐기물 보관소 주변, 1m이내, 높이 1.2-1.5m	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
	거주자 주거지역	2개소 이상	해체/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~3m, 높이 1.2~1.5m	-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

<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분석번호	AR.NO.20220709					분석 일시	2022. 07. 09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장비 (종류/수량)	유량 (l/분)	측정일시	측정 결과 (f/cc)	검출석면의 종류
	-	공시료	-	-	22. 07. 09	-	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
	-	공시료	-	-	22. 07. 09	-	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
	F - 1	폐기물보관지점	SARA5100 / 1	10.6	22. 07. 09	-	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
	F - 2	폐기물보관지점	SARA5100 / 1	10.5	22. 07. 09	-	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
분 석 연 구 원							

※ 참 고

-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(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)에 따라 1m³당 0.01개 이하를 말한다. (공기 중 농도 기준 : 0.01개/cm³ 이하)
-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사용 및 재발행 될 수 없음.
-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.
- 검출한계 <0.002/cm³ " <"는 검출한계를 뜻함.

(주)하늘석면기술연구원



■ 석면비산 측정 결과표

구분	지점		지점수	시료측정위치	비고
작업중	부지경계선		4개 이상	부지경계선 높이 1.2-1.5m	-
	위생설비 입구		전수(1개이상)	위생설비 입구 높이 1.2-1.5m 거리 1m이내	-
	작업장 주변	실내	1개이상	작업장 주변 높이 1.2-1.5m	-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-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
		실외	1개이상	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.2-1.5m	-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(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) - 음압기 설치 시 제외
	음압기		전수(1개이상)	음압기 공기 배출구 0.3-1m이내	-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
	폐기물 반출구		전수(1개이상)	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, 높이 1.2-1.5m	-
	폐기물보관지점		전수(2개이상)	폐기물 보관소 주변, 1m이내, 높이 1.2-1.5m	-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
	거주자 주거지역		2개소 이상	해체/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~3m, 높이 1.2~1.5m	-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

<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>

분석번호	AR.NO.20220710					분석 일시	2022. 07. 10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장비 (종류/수량)	유량 (l/분)	측정일시	측정 결과 (f/cc)	검출석면의 종류
	-	공시료	-	-	22. 07. 10	-	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
	-	공시료	-	-	22. 07. 10	-	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
	G - 1	폐기물보관지점	SARA5100 / 1	10.5	22. 07. 10	-	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
	G - 2	폐기물보관지점	SARA5100 / 1	10.6	22. 07. 10	-	검출한계미만 (불검출)
분 석 연 구 원							

※ 참 고

-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(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)에 따라 1m³당 0.01개 이하를 말한다. (공기 중 농도 기준 : 0.01개/cm³ 이하)
- 본 연구원의 허가 없이 사용 및 재발행 될 수 없음.
-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 시료는 30일 이내에 폐기될 것임.
- 검출한계 <0.002/cm³ "<"는 검출한계를 뜻함.

(주)하늘석면기술연구원

